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(전화 044-200-5651 / FAX : 044-200-5669, 담당 사무관 김옥식<E-mail : oksik@korea.kr>로 문의하여 주시고,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www.mof.go.kr/) 「법령바다/입법예고」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문화재청공고제2014-150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,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“울산 약사동 제방”의 국가지정문화재<사적>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4년 5월 29일

문 화 재 청 장

1. 공 고 명 : 「울산 약사동 제방」 국가지정문화재<사적> 지정 예고

가. 대상 문화재

- 종 별 : 사적
- 문화재 명칭 : 울산 약사동 제방
- 소 재 지 :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산 55-2 등
- 지정면적(문화재구역) : 6필지 1,492.8㎡
- 지번별 면적조서 : 붙임 참조

나. 지정사유

- 울산 약사동 제방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(6~7세기)에 저수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수리시설로, 제방의 축조공정과 함께 부업공법 등 고대 토목기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·학술적 보존가치가 큰 중요 유적임

다. 관리단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예고일 : 관보 공고일

3. 예고기간 :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

4. 특기사항

- 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 새소식 「문화재 지정 예고」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연 락 처

가. 문화재청

-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: 전화 042-481-4847/팩스 042-481-4843
- 주 소 : (우 302-701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- 홈페이지 : http://www.cha.go.kr

나. 지방자치단체

-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: 전화 052-229-3733/ 팩스 052-229-3719
- 주 소 : (우 680-701)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신정동, 울산광역시청)

「울산 약사동 제방」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사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1	울산시 중구 약사동	산55-2	임	8,721	971.6	한국토지 주택공사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
2	"	1068	구거	1,299	36.8	"	"
3	"	306-1	답	7,046	34.9	"	"
4	"	465-3	전	921	196.7	"	"
5	"	465-1	전	722	173.9	"	"
6	"	465-2	묘	450	78.9	"	"
계	6필지			19,159	1,492.8		

●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-54호

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

「광양항 GS칼텍스 원유2부두 복구공사」에 대하여 「항만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29일

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

1. 사업의 명칭 : 광양항 GS칼텍스 원유2부두 복구공사
2. 시행자의 성명(또는 명칭) 및 주소
 - 가. 성 명(또는 명칭) : GS칼텍스(주) 대표이사 허진수
 - 나. 주 소 :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번지
3.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
 - 가. 항만명 : 광양항
 - 나. 공사의 종류 : 토목
4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 - 가. 목 적 : 2014.1.31. 발생한 원유운반선(우이산호)의 원유2부두 충돌사고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원활한 부두운영 및 원유(원료)공급을 도모하기 위함.
 - 나. 사업개요
 - 위 치 :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
 - 사 업 비 : 40,885백만원(전기·계장, 배관공사 등 포함금액)
 - 사업내용 : 계류돌핀 3기, Trestle Pier 2기, Truss 및 Walkway 10기, 부대공 1식
5. 사업시행기간 : 착수일로부터 10개월
6. 기타사항 :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(☎ 061-650-615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(관계도서 게재 생략).

●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-25호

시정권고 재결

2014년 5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29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